

학칙 개정(안)

2026. 2.

계명대학교 교무처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: 직제개편에 따른 교무위원 변경

나. 신규 조문 대비표

발의부서: 교무·교직원팀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장 교무회의 및 각종 위원회</p> <p>제71조(구성과 소집) ① 교무회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총장, 각 부총장, 교목실장, 각 대학원장, 각 대학장, 각 처장, 산학협력단장, <u>지산학인재원장</u>, 창업지원단장</p> <p>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</p> <p>② 교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8 장 교무회의 및 각종 위원회</p> <p>제71조(구성과 소집) ① 교무회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총장, 각 부총장, 교목실장, 각 대학원장, 각 대학장, 각 처장, 산학협력단장, <u>RISE추진단장</u>, 창업지원단장</p> <p>2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</p> <p>② 교무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개정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RISE 추진단 신설에 따른 개정</p>